

●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-108호

「전파법」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-33호, 2008. 5.19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08년 8월 7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
일부개정

「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5에 따른 인증표시로 본다.

②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[별표 5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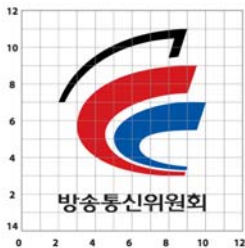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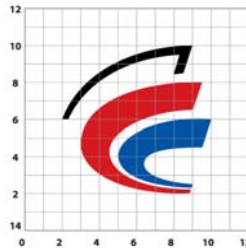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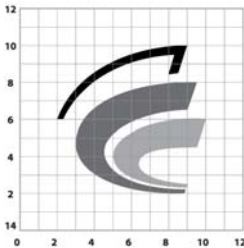
인 증 표 시 (제7조제2항 관련)

1. 인증표시 모양

가. 기본모양

칼 라		흑 백	
7mm 이상인 경우	7mm 미만인 경우	7mm 이상인 경우	7mm 미만인 경우
 방송통신위원회 인증번호 : XXX-YYYYYYYYYYY	 인증번호 : XXX-YYYYYYYYYYY	 방송통신위원회 인증번호 : XXX-YYYYYYYYYYY	 인증번호 : XXX-YYYYYYYYYYY

나. 크기와 색상

칼 라		흑 백	
			
검정 ■ Pantone Black CVC/CMYK K100 빨강 ■ Pantone 485 CVC/CMYK M100 Y100 K10 파랑 ■ Pantone 661 CVC/CMYK C100 M75		검정 ■ Pantone Black CVC/CMYK K100 회색 ■ Pantone DS325-3C/CMYK K70 밝은회색 ■ Pantone DS325-6C/CMYK K40	

2. 표시방법

가.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·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.

나. 인증표시의 크기는 인증 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

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칼라와 흑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다. 인증표시의 가로방향의 크기가 7mm이상인 경우에는 인증표시내 도안과 인증번호 사이에 ‘방송통신위원회’ 글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.

라.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인증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다.

마.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, 기기의 명칭(모델명), 제조연월, 제조자/제조국가,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.

사. 인증번호 부여

구 분	내 용
XXX (인증신청인 식별부호)	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
YYYYYYYYYYYYYYYY (제품 식별부호)	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 14자리

※ 주의사항

- 모든 부호는 영문,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품 식별부호에 하이픈(-)을 사용할 수 있다.
- 제품 식별부호는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로 표현한다.
예) 인증신청인 식별부호가 A12, 제품모델명이 CDEF-7650일 경우 : A12-CDEF-7650
-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“(A)”를, 가정용기기는 “(B)”를 표시한다.